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편드명 :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투자신탁 추가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~ 11. (생략) <신설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2. 트러스트 중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]</u>
	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u>